

안전은 권리입니다

2020년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사업 공모

2020. 07.



2020년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 사업장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지원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 지원

*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 사업개요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 12. 18.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 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 실시

- (사업규모) 28,200회(4,700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세종
밀착지원 (회/개소)	28,200 (4,700)	1,200 (200)	6,000 (1,000)	1,800 (300)	3,000 (500)	13,800 (2,300)	2,400 (400)

※ 사업장 당 6회 : 정기밀착지원(1회/월, 5회), One-point지원(1회/반기)

※ 권역별 목표물량은 공모신청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중 안전관리체제 구축 희망 사업장

* '20년 민간위탁사업, 위험성평가/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인정 사업장 제외, 안전관리 자율대행 사업장(회원사) 중복 지원 불가(신청일 현재)

- 수행기관은 공단에서 제공한 위험도 매트릭스(붙임6 참조)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

□ 과업내용

- 수행기관은 아래에 정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함

* 세부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정함

[정기밀착지원]

- (1단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에 관한 지도·조언
 -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해통계를 위한 지도·조언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선정에 관한 지도·조언

○ (2단계)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지원업무

- 제조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기술지원

사업분야	핵심 위험요인
제조업	❶ "끼임" 설비사고예방 지원(정비·보수 작업 중 끼임 포함) ❷ 크레인 작업 중 충돌·끼임 ❸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❹ 지게차 작업 중 전도·충돌 ❺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 (위험작업 파악) 제조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작업 수행시기 파악하여 One-point지원과 연계

○ (3단계)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 지원업무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인정 지원(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포함)
-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성 및 역할 수행 지도
- "클린사업장" 지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 (자율사업) 신청 시 각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자율적, 창의적 사업내용 수행

[One-point지원]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안전조치 이행지도
 - 제조업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작업(정비·보수 작업 등) 시기에 현장 방문하여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지도

○ **작업 전 근로자 교육**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작업 전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TBM 등을 통해 단시간 교육 또는 Spot교육 실시

□ **사업예산 및 수수료 지급방법**

○ **(사업예산) 39.48억원**

-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 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 실시

○ **(수수료) 사업수행비와 성과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 사업수행비는 지원횟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성과금은 차등지급

① **사업수행비 : 정기 밀착지원 150천원/회, One-point지원 60천원/회**

- * (지원한계) 수행요원별, 수행기관별 지원사업장 지원횟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정기밀착지원 월 평균 1회 이상, One-point지원 반기 1회※ 정기밀착지원은 최소 격주이상 간격으로 실시(단, One-point지원은 무관)· (수행요원) 정기밀착지원 1일 평균 3개소※ 1일 최대 4개소로 제한하되, 월 60개소 이내 지원(One-point지원 1개소를 정기밀착지원 1개소로 간주)※ 정기밀착지원 수행일에는 일반대행(위탁), 민간위탁기술지원 수행불가

- (선금) 계약 후 수행기관의 신청에 의해 공단 선금지급지침 등에 따라 지급
- (정산금) 사업수행 실적에 따라 사업수행비에서 선금 등 기지급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12월)

② **성과금 : 사업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전체 지원사업장 30%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장 당 100천원 지급(1.41억원)**

- * 사업수행비 이외에 별도 재원으로 편성하여 목표 지원사업장 수(4,700개소)의 30%범위 내에서 사업장당 100천원으로 책정

- * 141백만원 = 4,700개소×30%×100천원

- (지급대상) 권역별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 기관
- (지급한계) 권역별로 책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권역별 성과금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함에 따라 지원사업장수의 일부만 지급 될 수 있음

□ 사업평가

○ (평가시기) '20. 12월 예정

○ (평가항목)

- 과업내용 수행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지원사항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지원사항
 -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 지원사항
 - One-point 지원사항
- 재해감소성과
 - 각 수행기관별 지원사업장의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한 사고재해자, 사고사망자 등 사고재해 감축성적을 평가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방법)

- 평가단위 : 광역본부 권역단위 평가
- 과업내용 이행평가
 - 각 수행기관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지원사업장 보고서를 통해 평가
 - 필요 시 사업장 여건에 맞는 기술지도 여부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평가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등)
 - 평가기준 적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제공 및 교육 실시(본부→일선기관)
- 실적평가 : 재해감소실적, 자율안전관리체제구축 인정실적 평가
 - 재해감소실적,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인정실적은 본부에서 일괄 제공
 - 기술지원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실적평가 기준일까지 발표된 가장 최신의 재해통계로 평가
- 고객만족도 결과
 - 외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본부 일괄 제공

- 가중치 적용
 - 수행기관별 총 지원사업장의 고위험도 사업장 점유율이 높은 기관에 가중치 부여
 - * 위험도는 중업종·근로자규모별 위험도 매트릭스 적용
-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금 지급 : 평가결과 상위기관에 대해 성과금 지급
 - 사업 참여제한 : 평가점수 하위 기관 익년도 신규사업 참여(물량)제한
 - (평가점수 60%미만) 익년도 본 사업 신규참여 제한
 - (평가점수 70%미만) 익년도에 '20년 본 사업 수행물량의 50% 이내로 제한

2

수행기관 및 요원 자격

□ 수행기관 및 요원

- (수행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 * 단, 참여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된 기관은 제외
- (수행요원) 안전관리전문기관 기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수행기관은 밀착지원 전 소속 수행요원 자체 직무교육 실시(4시간 이상)

□ 사업제한 조건

- 공단은 수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계약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시 납부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처리 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공단에서 1차 경고하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음(단, 사회적 물의 여부는 심의회에서 결정)

-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한 판단은 ①사업착수 지연 ②월별 누적 실적이 평균진도율 기준 70% 미만인 경우 등
- 기타 계약 및 과업조건에 정하는 계약해제 및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사업(위탁) 수행요원 가용인력 대비 최대 2배 이내로 희망물량 신청하되, 참여신청 이후 채용예정인력의 채용확인 서류는 '20.8.29(금) 18:00(도착기준)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할 수 있음
 - * 채용확인 서류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 계약이 해제, 해지된 수행기관은 익년도 사업(위탁) 참여배제 및 차등성과금 미지급 등 패널티 부과
- 성과급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은 공단이 정하며 성과급 지급평가 기준(추후확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공단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 사업(위탁) 해당분야 참여를 배제함

3 수행기관 접수·선정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 7. 13.(월) ~ 7. 17.(금)
- (접수처) 공단 본부(사업 담당부서)
 -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 민간협력사업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일 기준)
 - 참여자격, 구비서류, 내용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한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
-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인력운영계획서 등
 - ① 참여신청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② 인력운영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출장소 소재 증명서류(임대계약서 등) 추가
- ④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1부.
- ⑤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참여인력 경력서 1부.
 - 수행요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수행요원별로 증빙서류 첨부)
- ⑥ 자율적, 창의적 사업계획서(자율양식, 1장 이내 작성)
- (수행지역) 참여기관이 고용노동부(지방청)로부터 지정받은 지역의 공단 광역본부 단위로 신청
 - (신청물량) 사업장 수 최소 60개소 이상(상한 없음, 광역본부 단위 60개소 이상)
 - ※ 단, 신청일 현재 기관 가용인력 기준으로 최대 2배 이내로 신청물량 제한

<사업장 신청 방법>

- (접수기간) 수행기관 선정 후 ~ 7.31(금)
 - ※ 광역본부별 지원신청 사업장이 목표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접수방법)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사업장 →수행기관→공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선정된 수행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장 선정일 전까지 해당 지역 심사기관에 일괄 제출
 - ※ 수행기관은 지원신청 사업장의 신청서 및 지원신청 사업장 목록(엑셀 자료)을 일괄 제출(목록에는 예비지원사업장 포함)

붙임5. 밀착지원 지원사업장 접수·선정방법 참조

□ **선정방법**

- (선정방법) 공단 본부에서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심사내용)
 - ① 참여신청 기관 및 수행요원 자격요건 심사
 - ② 참여기관별 물량 배분 우선순위 결정 및 순위에 따른 물량 배분

○ (심사방법)

- ① 기관·요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② 권역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등급,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③ 참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인력운영계획을 통해 기술지원 인력운용 등을 서면 심사

○ (심사기한) ~ 7. 22(수)까지(※참여 신청기관 수에 따라 연장 가능)

○ (기관선정)

- 선정 심사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기관별로 신청한 물량을 배정
- 접수 결과에 따른 본부 물량조정에도 불구하고 신청물량이 목표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배정
- ※ 추가 배정 협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권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본부)

5

기타 행정사항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심사 후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K2B에 발표 및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
- 사업수행 지원용품 제작·보급(본부·일선기관)**
 - 사고사망 감소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지원 시 필요한 물품(끼임사고 예방 LOTO 등), 교육·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지원
- 장기 지원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
 - 지원사업장에 대해 장기간(2년) 지원 및 수행요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익년도 예산 확보 시 공단-수행기관 계약 자동갱신 특수조건 삽입

공 고

2020년도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율
신청을 받아 민간 재해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밀착지원 실시

- 사업규모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밀착지원 신청사업장 4,700개소(28,200회)
- 예산규모 : 40.89억원
- 계약기간 : 2020년 계약일 ~ 12월 18일(2021년 예산 확정 시 자동연장 특수조건)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 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 실시
- 사업비용 :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비 및 성과급 지급

사업참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년 7월 13일(월) ~ 2020년 7월 17일(금)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K2B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신청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 단, 사업참여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기관은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출서류	• 공모참여 신청서 • 인력운영계획서 등
선정방법	•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등급,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문의처는 공단 본부 사업부서(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3~6)

2020년 7월 일



구분	(현행) 집중관리	(신규) 밀착지원																									
대상선정	- 집중대상 일방선정	- 안전관리지원 자율신청																									
선정시기	- 연초 1회 선정(2월)	- 신청사업장 中 선정(7월)																									
사업대상	- 50인미만 제조업	- 50인미만 제조업 中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현행></p> <p>집중관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위험도 매트릭스 -</p>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th> <th colspan="5">근로자 규모</th> </tr> <tr> <th>~5인</th> <th>5~9인</th> <th>10~19인</th> <th>20~29인</th> <th>30~49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중점종 (11개)</td> <td style="background-color: #f0e68c;">[사고사망자수(5년) / 사업장수(19년)] × 10,000</td> <td style="background-color: #f0e68c;"></td> <td style="background-color: #f0e68c;"></td> <td style="background-color: #f0e68c;"></td> <td style="background-color: #f0e68c;"></td> <td style="background-color: #f0e68c;"></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td>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td>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td>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td>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td>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td> </tr> </tbody> </table> <p>상대적 고위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신규></p> <p>자율안전관리 희망</p> <p>정기밀착지원 + ONE-Point</p> </div> </div>				근로자 규모					~5인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중점종 (11개)	[사고사망자수(5년) / 사업장수(19년)] × 10,000											
		근로자 규모																									
		~5인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중점종 (11개)	[사고사망자수(5년) / 사업장수(19년)] × 10,000																										
지원규모	- 61천 개소	- 4.7천 개소(21년 4.7천 추가계획)																									
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검사기관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 산안법 제21조 평가 "B(보통)"이상 기관																									
지원기간	- 1년	- 2년																									
지원빈도	- 연 3회	- 월 1회 이상 (정기밀착지원 1회/월, One-Point지원 1회/반기)																									
횟수제한	- 지원한계 최대 5회/일(다수 사업장 지원)	- 정기지원 한계 3회/일(질 담보)																									
비용수준	- 기술지도 최소 수수료(7.5만원/회)	- 민간시장수준 수수료 지원 (정기밀착지원 15만원/회, One-Point지원 6만원/회)																									
지원내용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집중지원	- 정기밀착지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지원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지원 •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지원 (위험성평가클린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 위험작업 일정 파악 - One-Point 지원 • 사망사고위험작업 시기 핵심위험요인 One-Point 지원																									
개선유인	[1단계] • 집중지원(3회/년) [2단계] • 공단 조치의뢰 [3단계] • 고용노동부 행정조치	[1단계] • 정기밀착지원(1회/월) [2단계] • 자체개선계획 + 비용지원 연계 • 위험작업 One-Point 지원(2회/년) [3단계] • 평가 부진기관 물량 하향(배제)																									
사업평가	- 사업평가 → 익년도 참여 시 반영 : 과업내용 준수여부, 달성도 등	- 사업평가 → 성과급 지급(상위 30%) : 재해현황, 자율관리체제구축 실적 등																									
기대효과	- 다수 사업장 지원	-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																									

수행 사항	기술지원 회차		
	1회차	2회차~	최종회차
1.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확인 및 측정여부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 인자 확인 및 검진 실시여부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안전인증 여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품 사용 여부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여부 및 성능유지 여부 - 10대 '끼임' 사고 다발 설비 보유 여부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파쇄기, 식품제조용설비, 사출기, 프레스) -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신규채용자, 정기, 관리감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 화재·폭발 위험작업 수행 여부	최초방문시	(변경사항 발생여부 확인)	
2. 주요공정(설비, 물질 등) 파악			
3.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성 및 역할 수행 지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 - 관리감독자 지정 역할	최초방문시		-
4.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 지원 - 기초현황을 참고하여 주요 위험 설비·작업 체크리스트 작성(공단제공포맷○종+현장특성 추가) <작업별핵심위험요인> ①정비·보수 작업 중 끼임 ②크레인 작업 중 충돌·끼임 ③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④지게차 작업 중 전도·충돌 ⑤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등 - 기초현황을 참고하여 현재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 제시(보고서 작성) - 필요 안전조치(안전장치,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교육 실시 → 향후 사업장 자율 관리를 위한 교육	-	체크리스트작성 ↓ 보고서작성 ↓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 교육 ↓ 위험성평가인정유도 ↓ 개선여부확인	
5. One-point 지원 - 작업전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지원 - 「작업전 10분 안전교육」, TBM 또는 Spot교육 실시	-		핵심위험요인(정비·보수 작업 등) 작업 실시 시기에 실시
6. 공단 사업 안내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인정 안내(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포함)			안내 실시
7. 기술자료제공, 자료보급 등 지원			자료 제공(해당시)

□ '19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 및 인력운영계획 평가(계량평가)

① '19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50점)

- S등급 : 50점, A등급 : 40점, B등급 : 30점, C등급 : 20점, D등급 : 10점

※ 신규기관('19년 평가 미실시)은 권역별 평균 점수 부여

② 인력운영계획서 평가(50점)

- 참여 인력 자격, 경력, 전담·겸직 유무 등으로 평가

·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분류

· (경력) 시행령 별표 7 인력 기준 경력*을 제외하고 산출

구 분	관련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지정인력 1호 해당자	10	9	8	7
지정인력 2호 해당자	8	7	6	5
지정인력 3호 해당자	6	5	4	3
지정인력 4호 해당자	5	4	3	2

* <예시> 산업안전기사 경력 10년 → 지정인력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력 5년 제외
→ 지정인력 2호 경력 5년으로 산출

· (전담·겸직) 월 수행물량 60개 기준으로 환산 적용

<적용 예시>

• <예시> 신청물량 120개소, 투입인력 전담 1명, 겸직 2명

성명	시행령 별표7 해당호	참여	자격기준		수행물량(개소)
			자격증	경력	
홍길동	1	겸직	안전기술사	7년	40
○○○	2	겸직	산업안전기사	7년	20
△△△	3	전담	일반기계기사	10년	60

→ (인력·경력 점수) 안전기술사(1호, 경력 7년) 9점, 산업안전기사(2호, 경력 7년-5년-2년) 5점, 일반기계기사(3호, 10년-4년-6년) 5점

→ (전담·겸직 적용) 전담 1인당 60개소 기준으로 점수 환산(만점 50점)

$$\frac{8\text{점} \times (40\text{개소}) + 5\text{점} \times (20\text{개소}) + 5\text{점} \times (60\text{개소})}{(120\text{개소})} \times (\text{가중치}^*) = 30\text{점}$$

* 가중치 : 5

□ **지원사업장 접수 · 선정[광역본부]**

가) 신청·접수

- (접수기간) 수행기관 선정 후 ~ 7.31(금)

※ 광역본부별 지원신청 사업장이 목표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접수방법)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선정된 수행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장 선정일 전까지 해당 지역 심사기관에 일괄 제출
- 수행기관은 지원신청 사업장의 신청서 및 지원신청 사업장 목록(엑셀 자료)을 일괄 제출(목록에는 예비지원사업장 포함)

※ 지원신청 사업장 목록(엑셀)은 업종(중업종)·근로자 규모를 기재하여 제출

나) 선정

- (선정방법) 수행기관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선정하되, 물량 초과 시 위험도 매트릭스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 우선 선정

- '20년 민간위탁사업 지원사업장은 제외
-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인정사업장 제외
- 안전관리 자율대행 사업장(회원사) 중복 불가(신청일 현재)
- 수행기관별 예비 사업장 선정(지원사업장의 휴·폐업, 철회 등)

※ 대체 필요 시 수행기관에서 요청(제외사유 증빙, 신규 신청서)하고 광역본부에서 승인

- (선정기한) ~8.5(수)까지(계약체결일 전까지 연장가능)

- (선정일 연장) 수행기관별 지원신청 사업장이 수행기관의 배정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일 연장 가능(단, 계약 체결 전까지)
- (선정일 분할) 추가 사업홍보, 기 지원신청 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조기착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선정·계약 후 지원을 개시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 추가 선정 기한 지정 가능(~8.21(금)까지)

□ 제조업 사고사망자 분석결과

- 최근 5년간 50인 미만 제조업 사고사망자수(829명) 분석결과
 - (중업종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452명, 54.5%),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109명, 13.1%),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64명, 7.7%) 순으로 발생
 - (규모별) 5인 미만(216명, 26.1%), 10인~19인(205명, 24.7%), 5인~9인(175명, 21.1%) 순으로 발생
 - (위험도) 제조업 중업종(11개)별 사고사망자 수 및 규모별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위험도 매트릭스 구성

고위험 사업장	○ 10인~19인 규모 : 선박건조및수리업 등 ○ 20인~29인 규모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 등 ○ 30인~49인 규모 :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등 ※ 위험도 40점이상인 업종·규모 영역을 중점지원(고위험) 타겟으로 선정
---------	--

위험도 매트릭스	구분 (제조업 중업종 및 규모별)	위험도 매트릭스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 19인	20인 ~ 29인	30인 ~ 49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9.7	34.0	66.6	96.6	150.2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16.5	26.4	59.9	69.5	75.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12.8	34.7	75.5	70.3	193.5
	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	7.7	31.2	46.1	118.8	95.7
	선박건조및수리업	34.9	46.3	146.9	131.6	310.1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9.2	36.6	47.6	80.9	170.5
	식품제조업	5.2	23.9	24.6	30.5	68.2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	0.3	2.4	5.9	14.2	11.2
	출판·인쇄·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2.2	3.9	15.2	0.0	61.5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	0.0	21.4	46.0	103.6	44.8
	금속제련업	0.0	0.0	357.1	952.4	0.0
※ 금속제련업 : 위험도는 높다고 분석되나 사망자수(5년합계 3명) 및 사업장수(184개소)가 타 업종·규모에 비해 매우 낮아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산식 : [사고사망자수(5년 합계) / 사업장수('19년 기준)] * 10,000 - 고위험 업종·규모 : 적색 음영 / 저위험 업종·규모 : 녹색 음영 - 정렬기준 : 최근 5년간 제조업 중업종 기준 사고사망자 다수 발생순						

<덧붙임1>

'20년도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공모신청지역 (수행희망)	() 광역본부	지정지역 및 한계	- 행정구역() - () 지방고용노동청 - () 개소 () 명
'19년 안전관리 전문기관 평가 등급	<input type="checkbox"/> S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 <input type="checkbox"/> D <input type="checkbox"/> 신규기관		
희망물량	() 개소	50인 미만 대행사업장수 (회원사)	() 개소
참여기관	기관명 및 주소		참여 수행요원(보유인력)
	【기관명】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FA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기준으로 작성> <input type="checkbox"/> 1호 : 전담 【 명】 , 겸직 【 명】 <input type="checkbox"/> 2호 : 전담 【 명】 , 겸직 【 명】 <input type="checkbox"/> 3호 : 전담 【 명】 , 겸직 【 명】 <input type="checkbox"/> 4호 : 전담 【 명】 , 겸직 【 명】
<p>2020년도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사업』 을 수행하고자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7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p>			
<p>▶ 첨부 서류 붙임</p> <p>1. 인력운영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p> <p>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출장소 소재 증명서류(임대계약서 등) 추가</p> <p>2.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각 1부.</p> <p>4.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참여인력 경력서 각 1 부 - 수행요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수행요원별로 증빙서류 첨부) 각 1부.</p> <p>5. 자율적, 창의적 사업계획서(자율양식, 1장 이내 작성)</p>			

※ 공모 신청지역은 지정받은 고용노동청 해당 공단 광역본부 단위로 작성
 ※ 접수처(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 민간협력사업부

<덧붙임2>

인력운영계획서(예시)

수행기관		〇〇재해예방원		신청물량		120
신청지역		인천광역시본부		밀착지원 수행요원		전담 1명 겸직 2명
성명	시행령 별표7* 해당호	참여	자격기준		수행물량(개소)	
			자격종	경력		
홍길동	1	겸직	안전기술사	7년	40	
〇〇〇	2	겸직	산업안전기사	7년	20	
△△△	3	전담	일반기계기사	10년	60	
계						

< 덧붙임3 >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참여인력 경력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기 간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개월)			
희망물량	수행기관 신청물량	()개소	기술지원요원 수행예정물량	()개소	
국가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 . .				
참여인력 경력사항	기관명	근무기간	전담/겸직	참여분야	참여개월
	00안전주식회사	'11. 1. 1. ~ '14. 12. 30.(48개월)	전담	안전	48
	00재해예방	'09. 1. 1. ~ '10. 12. 30.(24개월)	겸직	안전	6
					총 54개월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참여 경력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첨부서류 : 1.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수행요원별로 증빙서류 첨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출력
- 3. 근로계약서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덧붙임4 >

자율적, 창의적 사업계획서

< 자율양식, 1장 이내 작성 >